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공포(법률 제17383호, 2020. 06. 09.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규정을 정하고, 현행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구성 세부사항 규정(안 제15조)

- 1) 중대본부의 인력구성 사항을 삭제하고 방사능 재난 시 중앙방사능 방재대책본부 구성을 따르도록 하여 간명하게 규정함.
- 2) 공동차장제 운영 및 국무총리 중앙대책본부 권한 행사 등 상황을 구분하여 중대본부의 세부적인 구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
- 3) 해외재난은 외교부, 방사능재난은 원안위 소속 공무원으로 중대본 실무반을 편성하도록 규정함.

나. 대책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(안 제22조의1)

- 1) 대책지원본부는 행안부 소속 공무원,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파견된 자,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함.
- 2) 재난상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총괄반, 현장수습지원반, 협업지원반

등 기능별 실무반을 설치·운영함.

3) 재난 현장의 수습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 등과 합동으로 지원단을 구성, 현지에 파견할 수 있음.

4) 기타 대책지원본부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함.

다. 재난 관련 보험 가입대상 시설의 추가 및 가입시기 규정(안 제83조의3 관련 별표3, 제83조의4)

1)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에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는 시설을 추가함(안 제83조의3 관련 별표3)

2)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는 시설도 숙박업 및 관광숙박업을 하는 시설에 준하여 ‘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시기’를 규정함(제83조의4)

라. 적극 행정면책 기준 및 운영절차 등(안 제86조의 3~4)

1) 적극행정 면책 기준 및 제외대상 기준을 제시(제86조의3)

2) 적극행정 면책을 운영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(제86조의4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중앙대책본부에는 차장·총괄조정관·대변인·통제관·부대변인 및 담당관을 둔다. 단,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이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는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구성에 따른다.

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를 구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
제1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조 제7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항(종전의 제7항) 중 “제1항부터 제6항까지”를 “제1항 및 제3항까지”로 한다.

1.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, 외교부장관이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
2.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

하는 경우

3.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공동차장으로 지명하는 경우

③ 법 제14조제6항 전단에 따른 실무반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, 외교부 소속 공무원(해외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)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(방사능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)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편성한다.

1.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중앙대책본부의 공동차장으로 지명한 경우에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

2.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파견된 사람
제2장제2절에 제22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2조의1(대책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) ① 법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지원본부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및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파견된 자,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.

② 대책지원본부에는 재난 상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총괄반, 현장수습지원반, 협업지원반 등 기능별 실무반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③ 대책지원본부장은 재난 현장의 수습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기관·단체의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지원본부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

제83조의4제3항제1호 중 “제7호까지”를 “제7호까지 및 제20호”로 한다.

제86조의3 및 제8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6조의3(적극행정 면책 기준) ① 법 제77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을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들을 충족하여야 한다.

1.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,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, 재난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및 긴급구조·구호·대피 등 공공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것
2.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
3.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
4.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을 것
5. 위 3호, 4호에 요건을 갖추어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될 것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극행정 면책 대상에서 제외한다.

1. 재난 및 안전관리 의무나 지시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거나, 지연 및 회피한 경우
2. 금품을 수수하거나 편의를 제공받은 경우
3. 자의적인 법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배한 경우
4. 위법하거나 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인 경우
5.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 부당한 행위

제86조의4(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운영절차 등) ① 법 제77조의2에 따

른 적극행정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적극행정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법 제77조제2항과 제3항에 의한 조사 종료된 후,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장(전담기구가 없는 경우에는 동 업무를 담당할 부서의 장, 이하 전담기구의 장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면책신청을 받은 전담기구의 장은 영 제86조의3에 따른 면책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고, 면책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결정을 하고 이를 조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③ 전담기구의 장은 조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, 법 제77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.

④ 전담기구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를 받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.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면책을 신청한 사람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운영절차, 서식 및 결과의 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

별표 3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0. 「농어촌정비법」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는 시설

부 칙

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중앙대책본부의 구성 등) ① 중앙대책본부(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방사능재난의 경우 중앙대책본부가 되는 「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법」 제25조에 따른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는 제외한다)에는 차장·총괄조정관·대변인·통제관·부대변인 및 담당관을 둔다. ② 차장·총괄조정관·대변인·통제관·부대변인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 1. 차장: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2. 총괄조정관: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재난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3. 대변인: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	제15조(중앙대책본부의 구성 등) ① 중앙대책본부에는 차장·총괄조정관·대변인·통제관·부대변인 및 담당관을 둔다. 단,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이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는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구성에 따른다.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를 구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 1.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, 외교부장관이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2.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3.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

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

4. 통제관: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

5. 부대변인: 별표 1의3에 따른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

6. 담당관: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차장·총괄조정관·대변인·통제관·부대변인 및 담당관이 된다.

공동차장으로 지명하는 경우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③ 법 제14조제6항 전단에 따른 실무반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, 외교부 소속 공무원(해외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)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(방사능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)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편성한다.

1.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중앙대책본부의 공동차장으로

④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총괄조정관·대변인·통제관·부대변인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총괄조정관: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

2. 대변인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공무원

가.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

나.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

다.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

3. 통제관: 행정안전부 소속 공

지명한 경우에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

2.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파견된 사람

<삭 제>

무원 중 해당 재난업무를 총
괄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
는 일반직공무원

4. 부대변인: 별표 1의3에 따른
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
리주관기관 소속 고위공무원
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
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
을 받아 국무총리가 지명하는
공무원

5. 담당관: 행정안전부 소속 공
무원 중 해당 재난업무를 담
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
는 일반직공무원

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외재
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,
「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
사능 방재 대책법」 제2조제1항
제8호에 따른 방사능재난(이하
“방사능재난”이라 한다)의 경우
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
이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
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
공무원이 총괄조정관·통제관
및 담당관이 된다.

⑥ 법 제14조제5항 전단에 따른

<삭 제>

<삭 제>

실무반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과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편성한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④ 제1항 및 제3항까지-----

-----.

제22조의1(대책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) ① 법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지원본부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및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파견된 자,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.

② 대책지원본부에는 재난 상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총괄반, 현장수습지원반, 협업지원반 등 기능별 실무반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③ 대책지원본부장은 재난 현장의 수습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·단체의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.

제83조의4(재난 관련 보험 또는
공제의 보상한도액 등) ①·②
(생략)

③ 가입의무자는 법 제76조제2
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
따른 시기까지(보험등의 유효기
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
료일까지) 보험등에 가입하여야
한다.

1. 별표 3 제1호부터 제7호까지
에 해당하는 가입대상시설: 해
당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허가
· 등록 · 신고 · 면허 또는 승
인(이하 “허가등”이라 한다)이
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

2. (생략)

<신설>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
정한 사항 외에 대책지원본부
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
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

제83조의4(재난 관련 보험 또는
공제의 보상한도액 등) ①·②
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1. ----- 제7호까지
및 제20호-----

2. (현행과 같음)

제86조의3(적극행정 면책 기준)

① 법 제77조의2에 따른 적극행
정 면책을 위해서는 다음 각 호
에서 정한 기준들을 충족하여야
한다.

1.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불

합리한 규제의 개선, 재난지역
에 대한 지원, 재난관리를 위
한 각종 사업의 추진 및 긴급
구조·구호·대피 등 공공의
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
기 위한 것일 것

2.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적
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

3.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

4.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
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을 것

5. 위 3호, 4호에 요건을 갖추어
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
없는 것으로 추정될 것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
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극행
정 면책 대상에서 제외한다.

1. 재난 및 안전관리 의무나 지
시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거나,
지연 및 회피한 경우

2. 금품을 수수하거나 편의를
제공받은 경우

3. 자의적인 법해석 및 집행으
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
위배한 경우

4. 위법하거나 부당한 민원 수

<신 설>

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인 경
우

5.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
부당한 행위

제86조의4(적극행정에 대한 면책
의 운영절차 등) ① 법 제77조
의2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을 받
으려는 경우에는 적극행정 면책
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
등을 첨부하여 법 제77조제2항
과 제3항에 의한 조사 종료된
후,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전
담기구의 장(전담기구가 없는
경우에는 동 업무를 담당할 부
서의 장, 이하 전담기구의 장이
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면책신청을 받
은 전담기구의 장은 영 제86조
의3에 따른 면책 기준에 부합하
는지를 판단하고, 면책신청이
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
면책결정을 하고 이를 조사결과
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.
③ 전담기구의 장은 조사결과
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
검토한 결과, 법 제77조의2에

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
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
는 제1항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
는 경우에도 면책결정을 할 수
있다.

④ 전담기구의 장은 제2항 또는
제3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
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를 받
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
알려야 한다. 이 경우 제2항에
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면
책을 신청한 사람에게도 이를
알려야 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
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에 대
한 면책의 운영절차, 서식 및 결
과의 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
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	
연 락 처	(044) 205 - 4124